

창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106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보민

변론 종결 2021. 9. 17.

판결 선고 2021.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D 전 547㎡ 중 331/54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3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2018. 5. 3. A과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그 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A은 같은 날 E은행 고성군지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1	2018. 5. 3.	E은행 고성군지점	F	2023. 5. 2.	45,000,000원 (50,000,000원)
---	-------------	-----------	---	-------------	---------------------------

나.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당시 재산상태

A은 2019. 2. 14.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광양시 D 전 547㎡ 중 331/54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2. 20.경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37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A의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2018. 7. 19.자 대여금 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약 1,775,925,277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1,061,000,00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 확정

E은행은 2019. 3. 15.경 신용보증기금에 A의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 10. 22. E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44,657,044원(원금 44,055,000원 및 이자 602,0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A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44,657,044원, 미수위약금 37,6330원, 법적절차비용 873,629원 합계 45,907,003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44,657,044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보증약정 신용보증기금은 A을 상대로 위 구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차전3445호), 위 법원은 2019. 11. 12.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 4. 확정되었다.

라.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A은 2020. 4. 27. 이 법원 2020하단2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은행 옥포지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신용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 행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권 행사의 소인바, A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구상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

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7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A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A에 대한 2018. 7. 19.자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나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A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와 A은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거나, A이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채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을 위 대여금채권액에 근접한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등으로 A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지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아닌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인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가의 2)항 주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의 영업 계속 및 갱생을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2016년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어류포장업을 운영하였는데, 2017년 중순경부터 어류포장거래 방식의 변화, 멸치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그 무렵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A의 채무 내지 소극재산이 줄어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여 피고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의 영업 계속 및 갱생을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되는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진명

1) 당초 보증기한은 2014. 4. 11.이었으나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이 2018. 4. 6.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위와 같이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